

수신 서울시 관내 특수판매업자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1.5.21.)를 통해 1일 평균 600명대의 환자 발생 양상에 비해 위중증 환자 비율은 낮아지고, 그간 의료역량이 확충되어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2단계)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 조치 사항을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증상유무에** 관계 없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함도 알려드리니 **중사자(판매원과 직원, 유증상자 확인 시)들이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는 방역수칙 준수 확인을 위해 사업자단체(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를 통한 자율방역과 민간자율감시단을 통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주 요 내 용 》

- 적용지역 :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적용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 적용기간 : 2021. 5. 24.(월) 0시 ~ 2021. 6.13.(일) 24시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 붙임 1.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1부.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부.
3. 서울시 임시선별소 현황. 1부.
4. 방역수칙 안내문 (출입구 게시) 1부. 끝.

서울특별시



주무관 **이택선** / 인생대책팀장 **문주택** / 공정경제담당관 **박주선** 05/24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0269 (2021. 5. 24.) 접수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서소문동)

전화 2133-5367 / 전송 02-768-8852 / dlxortjs32@seoul.go.kr / 대시민공개

참고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①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③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
	④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⑤ 음식제공 및 섭취 금지 등 ■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및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음식물 섭취, 노래부르기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가능
	⑥ 손씻기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⑦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유지 	
	⑧ 환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⑨ 소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1회 이상 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반드시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⑧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추가수칙	① 시설 내 공용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추가 적용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붙임 **임시 선별검사소 연장운영 계획 (3.4~)**

연번	자치구	운영	장 소	개소기간	운영시간	비고
계	25	26				
1	종 로	1	종로구민회관 후문	2.15~	(평일)10:00~17:00 (토)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4
2	중 구	1	서울역 광장	2.15~	(평일)09:00~17:00 (토,일)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30~13:30
3	용 산	1	용산역 전면광장	2.15~	(평일)09:00~17:00 (토,일)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3
4	성 동	1	성동구청(농구장)	2.15~	(평일)09:00~17:00 (토)10:00~14:00 ※ 주말 공휴일 휴무	
5	광 진	1	중곡보건지소	2.15~	(평일)09:00~17:00 (토,일)13:00~17:00	평일 소독시간 13~14
6	동대문	1	청량리역 광장	2.15~	(평일)09:00~17:00 (토,일)12:00~16:00	
7	중 랑	1	면목역 광장 (3번출구)	2.15~	(평일)09:00~17:00 (토)09:00~13:00 (일)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30~13:30
8	성 북	1	성북구청 바람마당	2.15~	(평일)09:00~17:00 (토,일, 공휴일) 10:00~15:00	
9	강 북	1	강북구민운동장	2.15~	(평일)09:00~17:00 (토,일)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3
10	도 봉	1	도봉구민회관	2.15~	(평일)10:00~17:00 (토,일)10: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3
11	노 원	1	노원구청 주차장	2.15~	(평일)09:00~17:00 (토,일,공휴일) 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3
12	은 평	1	불광천 (증산로 414)	2.15~	(평일)09:00~17:00 (토)09:00~13:00	소독시간 12~14
13	서대문	1	신춘기차역 공영주차장 ※ 일요일 휴무	2.15~	(평일)10:00~17:00 (토,일,공휴일) 12:00~16:00	평일 소독시간 13~14
14	마 포	1	서강대역사 광장	2.15~	(평일)09:00~17:00 (토)09:00~13:00 공휴일 휴무	평일 소독시간 13~14

15	양 천	1	양천구의회 주차장	2.15~	(평일)09:00~17:00 (토)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3
16	강 서	1	마곡 8구역 공영주차장 (마곡동 728-43, 워킹스루)	2.15~	(평일)10:00~17:00 (토,일,공휴일) 10:00~14:00	평일 소독시간 13~14
17	구 로	1	구로역 광장	2.15~	(평일)09:00~17:00 (토)09:00~13:00, (일) 휴무 ※ 연장 및 확대 운영 - 2021.3.4(목),5(금),11(목),12(금) 09:00~21:00 - 2021.3.7(일),14(일) 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3
18	금 천	1	필승아파트 단지 내	2.15~	(평일)10:00~17:00 (토)10:00~15:00 ※ 연장 및 확대 운영 - 2021.3.4(목),5(금),11(목),12(금) 10:00~21:00 - 2021.3.7(일),14(일) 09:00~13:00	평일 토 소독시간 12~13
19	영등포	1	도림동 배드민턴 체육관	2.15~	(평일)09:00~17:00 (토,공휴일)09:00~13:00, (일) 휴무 ※ 연장 및 확대 운영 - 2021.3.4(목),5(금),11(목),12(금) 09:00~21:00 - 2021.3.7(일),14(일) 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3
20	동 작	1	사당문화회관 (사당권역)	2.15~	(평일)10:00~17:00 (토)10:00~14:00 (일) 휴무	
21	관 악	1	신림체육센터	2.15~	(평일)10:00~17:00 (토)10:00~15:00	소독시간 12~13
22	서 초	1	고속터미널역 1번출구	2.15~	(평일)09:00~17:00 (토,일)13:00~17:00	평일 소독시간 12~13
23	강 남	2	삼성역6번출구(코엑스)	2.15~	(평일)09:00~17:00 (토,일)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3
			세곡동 방죽공원 (울현동 254-3)	2.15~		
24	송 파	1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	2.15~	(평일)10:00~17:00 (토)10:00~15:00	소독시간 12~13
25	강 동	1	암사역사공원 주차장 (암사동 193)	2.15~	(평일)09:00~17:00 (토,일)09:00~13:00	평일 소독시간 12~13

특수판매업 방역수칙 안내문

이용인원 제한 안내

정부의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조정에 따라 이용인원을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 업 체 명 :
- 시설면적 : m^2
- 이용인원 : **명(8 m^2 당 1명)**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 m^2 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시설 이용 자제 권고